

##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「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6일

무 안 군 수

1. 조례명: 「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2. 개정 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(행정안전부(2023.11.8.))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(행정안전부(2022.4.29.))」 권고사항 반영
-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지 대부 및 사용 허가 시 대부료율 인하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공유재산법령 위반 사항 정비

-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부적절한 규정(정무직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을 민간인으로 분류)(안 제11조)

“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민간인 중”→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”

-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 수정(안 제23조)  
“영 제17조를”→“법 제21조제1항”, “기부채납일”→“사용허가 받은 날”

#### 나. 대부료의 요율(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)(안 제38조 제4항 제7호 신설)

-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#### 다.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

- 1급 관사 폐지(안 제59조, 제60조, 제61조, 제62조, 제66조)
- 관사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적용(안 66조)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# 5. 입법 예고기간 : 2024. 3. 26. ~ 4. 15. (20일간)

### 6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(참조 회계과장, 전화 450-538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 
전화번호

## 7. 의견 제출할 곳

우)534-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번지 무안군청 회계과  
(전화 061-450-5382, 팩스 061-450-5157)

## 8. 의견 제출방법: 우편 또는 팩스

# 「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- 주 소 : \_\_\_\_\_
-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시행조례안 내 용	찬 반 여 부		의 견
	찬 성	반 대	

##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포함한7명이상”을 “포함한 7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과반수”를 “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하되”를 “하고 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1.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
2. 무안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 소속의 5급 이상 실·단·과·소장

제23조 중 “영 제17조를”을 “법 제21조제1항을”로, “기부채납일”을 “사용허가 받은 날”로 한다.

제3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제59조 중 “군수·부군수”를 “부군수”로 한다.

제60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급”을 “2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20m<sup>2</sup>”를 “85m<sup>2</sup>”로 한다.

제62조 단서 중 “1급·2급”을 “2급”으로 한다.

제66조제2호 중 “1급 내지 2급”을 “2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4.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·관리에 따른 경비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<u>7명 이상 15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민간인 중에서</u>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<u>과반수</u>가 되어야 한다.</p> <p>1. <u>공유재산 또는 지방재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무안군의회의원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되</u>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심의회 구성) ① ----- ----- <u>포함한 7명 이상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</u>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<u>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</u> 하여야 한다. ----- <u>전체</u> 위원 정수의 <u>과반수</u>-----.</p> <p>1. 무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<u>군의원</u></p> <p>2. 무안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 <u>소속의 5급 이상 실·단·과·소장</u></p> <p>3. ~ 6. (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하고 한 차례만</u> ----- -----.</p>

제23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적용하여 산정하되,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3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제59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관사”라 함은 군수·부군수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

제60조(관사의 구분)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1급 관사 : 군수 관사

2.·3. (생략)

제61조(관사의 면적기준) 1급 관

제23조(무상사용기간) -----

----- 법 제21

조제1항을 -----

----- 사용허가 받은 날-----

-----.

제3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도서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및

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

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

여 대부하는 경우

제59조(정의) -----

----- 부군수 -----

-----

-----

-----.

제60조(관사의 구분) -----

-----.

<삭제>

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관사의 면적기준) 2급 ---



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.

1. (생략)

2. 아파트(전용면적) : 120m<sup>2</sup>

제62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1급·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.

제6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(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)

3. 보일러 운영비(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)

4. 응접셋트,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(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)

5. 전기요금(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)
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85m<sup>2</sup>

제62조(사용허가) -----  
-----  
-----.

제6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2급 ----  
-----

<삭제>

4. 기본적인 비품의 구입 및 유지·관리에 따른 경비

<삭제>

6. 전화요금(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)

<삭 제>

7. 수도요금(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)

<삭 제>

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(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)

<삭 제>